

제302회 정례회  
2011.07.22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11.07.22.(금)
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상필 교육위원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07월 01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07월 07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07월 14일

(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상필 교육위원)

가. 2009년에 개정된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, 평생교육수요자 수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.

- 나. 이에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·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평생학습관 기능과 지정 및 지정절차를 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  
나.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  
다.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 등에 대해 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### 4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왕년)

-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에 따른 다양한 학습욕구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여, 그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「평생학습관 지정절차, 운영위원회 구성·기능·회의, 수당등, 지도」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, 그 밖에 현행 조문을 일부 보완하는 등 기존 6개 조문을 12개 조문으로 정비한 것임.
-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수요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, 평생교육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자료 개발
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4.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
5.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
6.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협력체계 구축
7.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.

**제3조(지정·운영)**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.)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평생학습관의 지정·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, 해당 기관이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

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**제4조(지정절차)**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
2. 시설·조직 및 예산 현황
3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서
4. 평생교육 관련 전문 인력 배치 현황
5.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

② 교육감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.

**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)**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
2.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
3. 평생교육관계 공무원
4. 평생학습관의 관장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평생학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와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 및 직원으로 한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생학습관 지정·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평생학습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
**제7조(운영위원회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수당 등)**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9조(지원)**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지도·감독·지정취소)** ①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자료의 요구 및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·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운영책임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강료 징수)**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, 교재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(2000. 10. 1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10. 1)

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7. 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□ 평생교육법

- 제21조(시·군·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청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교육기본법

- 제3조(학습권) 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
- 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- ②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